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

고병국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산지·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연경관지구 내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노후·불량 건축물의 정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완화구역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아울러 소규모 토지이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하고,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, 건폐율 및 층수·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
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